#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8 발의연월일: 2020. 7. 27.

발 의 자: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이규민 · 홍정민 · 박성준

서동용・박 정・고영인

이상민 · 우원식 · 윤재갑

김성환 · 이상직 · 강선우

송갑석·김수흥·허 영

홍익표・인재근・우상호

양기대・홍성국・최강욱

강민정 · 임호선 · 이장섭

정청래 · 신정훈 · 이탄희

김민석・류호정・강은미

김민철 • 이원택 • 윤미향

이수진비・이재정・용혜인

정필모 • 임종성 • 박범계

오영환 · 김철민 · 이용선

조승래 • 설 훈 • 노웅래

안민석 · 김두관 · 남인순

이낙연・진성준・한병도

강훈식 · 김병기 · 김원이

이동주・소병철・황보증회

문정복・양경숙・이성만

홍기원 · 김병욱 · 이소영 정일영 · 박재호 · 조오섭 김주영・양향자・김영배 문진석 • 박홍근 • 서영석 신영대 · 김정호 · 전재수 김홍걸・이은주・유동수 고용진 · 김승원 · 양정숙 한준호 · 전혜숙 · 김민기 신동근 · 김승남 · 소병훈 장철민 • 이상헌 • 윤영덕 박완주 · 김진표 · 임오경 이해식 · 박광온 · 이학영 진선미 · 민형배 · 송영길 서영교・도종환・송옥주 이개호 · 이형석 · 이원욱 김용민 · 안규백 · 김영진 맹성규 · 정정순 · 김태년 유정주 • 기동민 • 윤관석 이수진・박주민・유기홍 장경태 · 서삼석 · 양양영 어기구 · 황 희 · 김상희 정춘숙 · 박상혁 · 김회재 정성호 · 이용빈 · 민병덕 이정문 · 심상정 · 장혜영 배진교 의원(13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주4.3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충실히 드 러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도록 제주4.3사건의 정의 조 항을 변경함(안 제2조)
- 나.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 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신고처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는 이 법 시 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함(안 제9조).
- 라.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 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을 무효로 하고,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함(안 제16조).
- 마.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되어 사망여부가 여전히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실종과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안 제28조, 제29조)
- 사.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함(안 제30조, 제31조).

법률 제 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회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 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 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 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 다.
-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 제4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보상·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 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주4·3사건의 진상 및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 의 조사에 관한 사항
- 2. 진상조사 결과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3.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조사, 예비검속 및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조사,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신원확인 등에 관한 사항
-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5.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6.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7.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8. 제1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 9. 제28조에 따른 행방불명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⑦ 위원회는 진상조사 또는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진상조사 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8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 복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 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

- 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 게 증언할 수 있다.
  -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 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장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등

- 제8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 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OOOOO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OOOO년 OO월 OO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 보상에 관

- 한 사항과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한다.
- ④ 그 밖에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진상조사) ① 위원회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상황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수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진상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조사대 상자 및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2. 신고인, 조사대상자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와 제출된 자료·물건의 영치
  - 3. 신고인, 조사대상자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의무) ① 정부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의견 진술에 필요한 조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 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과 국회 보고,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접수된 피해 신고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

는 사람을 결정한다.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기록의 정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①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법회의의 관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군법회의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 회의의 명령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한다.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희생자와 유족 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③ 법무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한다.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희생자와 유족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17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희생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 1.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수형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수형(受刑)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수형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수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4.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행방불명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③ 제2항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희생자의 배우자로 간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재심의) ① 제1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제18 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120일"은 "90일"로 본다.
- 제2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22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3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보 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 제24조(배상 의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희생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4. 제주4·3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7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결정, 지급방법, 지급결정에 관한 재심의소송, 지급 권리 보호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의료지원금"으로 본다.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실종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가 제2조제2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유족,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는 제1항에 근거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사망신고의 절차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인지청구의 특례) ① 제주4·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OOOOO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OOOO년 OO월 OO일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28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 제3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1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추념 행사의 거행

-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 제33조(제주4·3평화재단에의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기념관 및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관리, 희생자·유족의 생활안정·복지증진, 기념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34조(추모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회 등 추모단체와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제37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에 따른 제주4·3평화 재단과 제34조에 따른 추모 및 관련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벌칙

- 제38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벌칙) 제6조제1항를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법칙) 다음 가 호인 어느 참나에 체단하는 사라은 2년 이하여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제1호의 요구에 따른 신고인,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의 출석을 방해한 사람
- 2. 진상조사 시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사람
-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나 부 당한 처우를 한 사람
- 제41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법률 제OOOO 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 정법률의 시행일인 OOOO년 OO월 OO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루어 진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은 제13조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으로 본다.